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960 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재형, 경만선, 김제리,

김화숙, 장상기, 김종무,

노식래, 문병훈, 이태성
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개정(법률 제17484호, 2021. 2. 19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31031호, 2021. 3. 23. 시행)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비례하여 완화하도록 한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하고, 부설주차장설치대수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완화 받을 수 있는 요건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방법, 비용 산 정기준 등을 정함(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나.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·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용적률 산정방법을 정함(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(이하 "주차장"이라 한다)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
 - 1.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 - 2.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(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)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 어 산정한다.

- 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의 토지 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.
- 4. 건축비는 해당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(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

제50조의 제목을 "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하며, 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(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비율이 20퍼센트 이상 인 경우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 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
 - 2.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: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+ (당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× 2.5)

제5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 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9조제3항 및 제 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건축규제의 완화) ① (생 략)	제49조(건축규제의 완화) ① (현행과
	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③ 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
	영 제40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
	족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(이하 "주
	차장"이라 한다)의 사용권 확보를 위
	한 방법은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
	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
	<u>부하는 방법으로 한다.</u>
<u>〈신 설〉</u>	④ 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
	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
	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
<u>〈신 설〉</u>	1.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
	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
	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
	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
<u>〈신 설〉</u>	2.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
	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
	비용(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
	다)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
	<u>한다.</u>

〈신 설〉

〈신설〉

제50조(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 법 제49조제1항에서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이란 전체연면적(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)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임대주택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. 단, 세대수기준으로 하는 경우로서임대주택의 명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이상으로 한다.

<u>〈신 설〉</u>

- 3. 토지가액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8항의 토지가 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있다.
- 4. 건축비는 해당 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(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)로 한다.

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)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 적률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(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 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 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
	한 법률」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
	<u>따른 용적률의 상한</u>
<u>〈신 설〉</u>	2.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
	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
	되도록 건설하는 경우: 「서울특별
	시 도시계획조례」 제55조에 따른
	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+ (당해
	<u>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× 2.5)</u>
<u>〈신 설〉</u>	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
	건설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를
	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
	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
	되도록 하여야 한다.